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발의자 : 서상열 의원 (찬성자 15명)
- 나. 의안번호 : 제 3156 호
- 다. 발의일자 : 2025. 10. 17
- 라. 회부일자 : 2025. 10. 23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 중 시민들의 양보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에 따라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해 시장이 중점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참조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5. 10. 28.~11. 01.)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전용구역에 대한 정보구축 및 유지관리와 소방통로 확보 훈련 실시 등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현장 도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표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p>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통한 시민 의식 개선</p> <p>2.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전용구역에 대한 정보구축 및 유지관리</p> <p>3.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전용구역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p> <p>4. 그 밖에 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u>제5조(생 략)</u>	<u>제6조(현행 제5조와 같음)</u>
<u>제6조(생 략)</u>	<u>제7조(현행 제6조와 같음)</u>

■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운영 현황

-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¹⁾에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1. (생략)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9조²⁾에 근거하여 도로에서 긴급자동차로서의 우선 통행권을 갖는 법적 지위를 가지며,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반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 할 수 있음.

-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구급차 등을 포함한 총 19종류의 긴급차량을 860대 보유하고 있으며([표 2] 참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³⁾의 소방차 등 긴급 차량 배치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소방기관별로 긴급차량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2] 서울소방재난본부 긴급차량 보유 현황(2025년 기준,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단위 : 대)

긴급차량(19종 860대)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무인화방차	소방화학차	화생방대응차	사다리차	굴절차	소형사다리차	재난지휘차	구조차	구급차	화재조사차	조명배연차	이동정비차	발전배수차	회복지원차	유조차	장비운반차	이륜차
119	103	1	27	7	27	24	11	53	57	188	27	25	1	4	1	1	59	125

나. 구급차

(이하 생략)

- 2)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3)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진입곤란지역·전용구역 관리 현황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동 조례에 따라 관내 긴급차량의 현장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소를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소방차 전용구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먼저,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은 폭 2m이하 도로 또는 이동이 불 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이며,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 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그 밖의 상습주차 등의 이동이 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역임.
- 이러한 기준에 따른 서울시의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을 살펴 보면([표 3] 참조), 2021년 350개소, 2022년 331개소, 2023년 328개소, 2024년 324개소, 2025년 318개소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전국적으로는 가장 높은 실정([표 4] 참조)임.

[표 3]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서울시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현황(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단위 : 개소)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9
계(개소)	350	331	328	324	318
소방차 출동불가지역(개소)	103	102	99	99	97
소방차 출동곤란지역(개소)	247	229	229	225	221

[표 4] 전국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현황(2025년 기준,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계	318	108	64	72	4	36	21	6	4	10	5	2	0	4	8	10	6	8	16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97	0	0	1	3	0	3	5	1	1	2	1	0	1	0	3	2	0	5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221	108	64	71	1	36	18	1	3	9	3	1	0	3	8	7	4	8	11

- 이에 대응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매년 「소방차 진입불가·곤란 지역 정비 및 관리강화 계획」⁴⁾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노면표시 정비, 조명블럭 보수,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등 출동환경 개선을 추진⁵⁾하고 있음.

4)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정비 및 관리강화 계획」

- 추진근거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화재진압 종합대책(재난대응과 제3780(2015.2.17.)호)」
 -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재난대응과 제714(2016.1.12.)호)」
- 추진배경
 - 서울 곳곳에 산재한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해소로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
 -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공 화재진압시설 보강으로 지역사회 화재안전 강화
- 추진기간 : 매년 1. 1. ~ 12. 31. / 연중
- 추진목표 : 전년 대비 10% 이상 해소, 공공화재 진압시설 보강 등

(증점 추진사항)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해소 + 안전시설 확충 + 훈련 강화

5)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현황(2025년 기준,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조명블럭 설치('16.~'19.) 및 유지·관리('20.~'25.)
 - 노면표시 790개소[소방차통행로 598 정차금지지대 192], 조명블럭 312개소
 - '22~'25년은 기존 설치분 보수('22년 60개소 → '23년 43개소→ '24년 39개소→'25년 52개소)
 - ※ 노면표시 및 조명블럭 보수 예산('26년): 23,400천원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소화기함 설치 현황

불가·gon란지역(곳)			비상소화장치		보이는소화기함		비소함 또는 소화기함 미설치지역(곳)
합계	불가	곤란	설치지역(곳)	설치수량(개)	설치지역(곳)	설치수량(개)	
318	97	221	318	721	300	3,492	0

-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확선: 1,279개소
 - '20년이전 1,100개소 → '21년 32개소 → '22년 47개소 → '23년 55개소 → '24년 45개소 확선 完
- IoT 소화전 관리시스템 시범운영: 13개소 (창신동, 부암동)
 - 소화전 원격관리 및 불법 주정차 사전차단('25.9.30. 기준 7,292건)으로 취약지역 소방활동 환경개선
- 소방통로확보 훈련 실적(자체 및 유관기관 협동)

- 아울러 소방, 경찰, 자치구, 도로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개선협의회도 25개 소방서별로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음.([표 5] 참조)

[표 5]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협의회 구성·운영 현황(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성) 25개 소방서에 1개씩 구성(소방·경찰·지자체·도로관리기관 등 ※ 과장급 이상 구성) ■ (운 영) 연 1회 이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25개 협의회 운영 실적 : 111회(참여인원 : 소방(244), 경찰(63), 자치구(273), 기타(143)) ■ (2025년도 협의회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좁은 도로 및 상습 불법 주·정차도로 : 양방향 → 일방통행, 소방출동로 노면표시, 주차금지표시봉 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CCTV 설치 등 ▶ 주차구역 재정비(이면도로 등 주차선 삭제·이동) : 도로폭 4m 이상 확보 ▶ 소방차 주행 여건 개선 : 장애물, 급경사·급커브, 회전교차로, 도로포장 등 ▶ 지자체 도로관련 예산편성 시, 소방통행로 관련 예산 우선 확보 요청 ▶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도로·주차장 설계단계부터 관할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로 출동로 관리 |
|--|

- 다음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6)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법정 구역으로,
-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3층 이상의 기숙사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의 건축주에게 각 동의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⁷⁾,

- 2023년 9,396회, 2024년 8,879회, 2025년 5,368회
- 소방통로 확보훈련 : 본서 주관 월 1회, 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6)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

- 해당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 제56조제3항 및 법 제1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100만원)가 부과⁸⁾되고 있음.
- 다만,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의무는 2018년 2월 9일 법 개정 당시 부칙에 적용례가 명시⁹⁾되면서 법 시행일인 2018년 8월 10일 이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관내에서는 총 72개소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운영 중([표 6] 참조)이며,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정차,

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8) 「소방기본법」제5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소방기본법 시행령)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마.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	50	100	100

9) 「소방기본법」부칙<법률 제15365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물건 적치 등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
([표 7] 참조)하고 있음.

[표 6] 서울시 소방차 전용구역 현황(25.9.30.기준,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단위 : 개소)

구분	계	종로	중구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계	72	1	0	6	1	5	5	2	4	2	2	8	6	0	1	4	5	4	5	0	4	1	0	0	2	4

※ 아파트가 단지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동마다 설치해야 하며, 본 표에서는 단지를 하나로 간주하여 주소자별로 1개로 기재하였음.

[표 7] 최근 3년간(23~25)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단속 현황(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단위 : 건)

합 계	2025년 9월 기준	2024년	2023년
80	44	33	3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법률 적용 대상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단속건수도 증가함

※ 2022년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도입되면서 기존에 소방공무원이 직접 현장 출동해서 확인해야 했던 단속 구조보다 단속 실효성이 크게 향상

- 또한 소방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전용구역 상시 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음. ([그림] 참조)



[그림] 소방차 전용구역 홍보 및 단속 등 계도

- 그 외에도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및 전용구역 전반에 대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대국민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긴급차량의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표 8] 참조)

[표 8] 최근 3년간('23~'25)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홍보·교육 현황(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단위 : 개수, 회, 명, 대)

구분	구간 (개수)	횟수 (회)	동원인원(명)					동원차량(대)			
			계	소방	의소대	유관기관	기타	계	소방	유관기관	기타
2025.9	4,611	5,368	29,049	27,479	448	475	647	5,751	5,561	150	40
2024	6,692	6,880	32,786	31,031	919	366	470	8,785	8,657	116	12
2023	10,159	9,396	42,522	41,306	347	488	381	10,126	9,961	152	11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 실적>

(단위 : 회, 개소, 명, 대)

구분	횟수 (회)	장소 (개소)	참여인원(명)					참여차량(대)	
			계	소방	의소대	유관기관	기타	계	
2025.9	944	994	7,940	6,279	462	455	744		1,166
2024	2,099	2,189	13,421	11,542	707	296	914		2,388
2023	1,986	2,488	12,736	11,175	434	472	655		2,740

<대국민 홍보·교육 실적>

(단위 : 회, 명)

구분	대국민 홍보(회)				교육 실적(명)		
	영상	라디오	신문	홍보물 등	계	대면	비대면
2025.9	3,053	16	27	1,989	879	300	579
2024	1,991	0	17	2,455	1,868	1,674	194
2023	3,275	40	122	6,923	1,183	511	672

■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안 제5조)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이를 위해 안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신설하여,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통한 시민 의식 개선',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전용구역에 대한 정보구축 및 유지관리',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전용구역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 '그 밖에 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긴급차량의 현장 접근성 저해요인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 인식 제고와 신속한 현장 대응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및 전용구역에 대한 운영 실태 관리와 각종 홍보·계도 등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이 제도적 근거가 되어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